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4767 등록면허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54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08,000,000원, 2013. 3. 15.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48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96,000,000원, 2013. 6. 11.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40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8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4호로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이 정한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7. 2. 12.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정한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7., 2013. 2. 27. 및 2013. 5. 21. 각 자본금 증가로 인한 법인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를 하였고, 2012. 7. 31. 등록면허세 54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08,000,000원, 2013. 3. 15. 등록면허세 48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96,000,000원, 2013. 6. 11. 등록면허세 40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8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이하 개정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이 사건 조항은 문언상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불문하고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법, 혁신도시법의 입법목적이 단순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본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그 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384 판결 등 참조).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 시행되기 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등록세 감면을 규정하던 구 지방세법(2010. 12. 17. 법률 제1046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4조의2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이기만 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비록 이 사건 조항이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와는 달리 규정되게 된 이유에 관한 입법 자료를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언이 명백히 달라진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항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균형발전법이나 혁신도시법의 입법목적 및 지방세제한특례법 제85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는,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이전이 예정되면 그 때부터 이전공공기관에게 그 사유를 불문하고 법인등기에 대한 지속적인 등록면허세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고도 원활한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을 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판사 김영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2. 17. 법률 제1046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제274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끝.